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윤성민* Sung-Min Yun

목 차

I. 서론	IV. 다수당사자 중재병합의 법률적 쟁점
II. 다수당사자중재의 개념	V. 결론
III. 다수당사자 중재병합의 합리성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다수당사자중재, 다수당사자분쟁, 중재합의, 중재병합, 중재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I. 서론

글로벌 시장경쟁 하에서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의 계약방식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상사분쟁에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수당사자중재(Multi-party Arbitration)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병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수당사자중재와 관련하여, 각국의 중재법으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2012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개정 「중재규칙」에서 다수당사자, 다수의 계약 및 중재 절차의 병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 2016년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의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다수당사자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로 병합하여 복수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 중재계약 합의가 존재한다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을 단일중재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당사자간의 중재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최근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기관의 중재판정부는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모순된 판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인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도 즉 합의에 기인하는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병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또한 중재계약에 합의하지 않은 당사자의 중재 참여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과중재인 선정 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서 중재병합의 적용상의 합리성 및 집행상의 쟁점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다수당사자중재의 개념

1. 다수당사자중재의 정의

양당사자간의 분쟁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제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다수당사자 분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¹⁾ 특히 플랜트 수출거래, 건설업, 해사 분쟁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활용되고 있다.²⁾ 복수의 이해관계자(동일 선박에 선주, 용선자와 재용선자 등)가 포함되는 운송계약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2명 이상으로 다수의 계약 관계를 갖게 되므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다차원적인 중재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수당사자중재는 첫째, 한 건의 거래를 위해 다수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당사자는 다수의 계약으로 상호 연결된 형태이다. 즉 A와 B가 갑 계약, B와 C가 을 계약 그리고 C와 D가 병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B, C, D간에 갑, 을 병 세 건의 계약으로 상호 연계된 방식으로 국제상사거래에서 특히 해상운송, 건설거래와 국제물품매매³⁾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⁴⁾ 둘째, 한 당사자가 거래를 위해 다수의 당사자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자 A는 건축 설계상 B와 갑 계약, 건축 시공사 C와 을 계약, 인테리어 D와 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병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중재 혹은 중재병합을 선택할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전자의 경우 A-B분쟁, B-C분쟁 C-D분쟁 해결방식을 취하고, 후자의 경우 A-B분쟁, A-C분쟁, A-D분쟁을 중재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재병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 전자든 후자든 중재판정부는 단일중재 절차로 A, B, C, D 즉 갑, 을, 병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을 단일절차로 병합하여 해결하게 된다.

1) Iris Goldner(2001), Issues of Comparative Law: Multi-Party Arbitration, Croatian Arbitration Yearbook, Vol.109 No.8, p109.

2) 이강빈(1998), "다수당사자 중재에 있어서 절차병합과 중재인선정", 「중재연구」 제8권, 한국중재학회, pp.37-38

3) 국제물품매매에서, 거래단계마다 판매상은 동일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손상이 발생했는데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소매상-도매상-생산자의 분쟁 형식을 띤다.

4) Iris Goldner(2001), *op.cit.*, p.109

2. 중재병합의 종류

중재병합과 관련하여, ICC는 국제상사중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개정 「중재규칙」에서 다수당사자분쟁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를 병합할 수 있다. 즉 i)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한 경우, ii)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iii) 각 청구가 복수의 중재합의에 근거한 경우이다. 한국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이 소송절차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병합할 수 있는 경우와 합의 이외의 일정한 요건 즉, 사건 관련성으로 중재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도 중재합의, 분쟁의 성격 그리고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중재법」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를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당사자중재도 이에 근거하여 다수당사자 전원합의가 존재한다면 병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미국의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중재병합을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⁶⁾

중재병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병합이다. 합의의 중재병합은 당사자가 중재합의서에 중재병합의 합의를 명확히 약정하였거나 분쟁 발생 후 보충적 합의로 둘 또는 둘 이상의 중재절차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단일절차로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분쟁 발생 이후에 보충적 중재합의에 도달한 경우 기 진행 중인 중재절차에 따라서 중재사안을 단일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중재절차의 병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므로 특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는 강제적 중재병합이다. 국제상사계약에서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분쟁 사안이 다른 중재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효율성 저하 및 모순된 판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중재병합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중재기관 혹은 중재판정부는 중재사안간의 연관성으로 인해 개별사안의 심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모순된 판정 등의 문

5) 영국 「중재법」 제35조; 스웨덴 1996년 「중재법」 제12조에서도 영국 중재법 제35조와 같이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중재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6) 미국의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상사중재법」 제26조 제1항에서도 법원이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조건으로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김명엽(2003), “다수당사자중재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219

7) Julie C. Chiu(1990), “Consolidation of Arbitral Proceeding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7, p.55.

제로 중재절차를 강제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현재, 강제적 중재병합에 대한 각국의 입법, 중재규칙 및 국제조약의 규정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선정한 특정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중재병합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 적용의 배제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는 병합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정할 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강제적 중재병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에 주의해야 한다.

3. 중재판정부의 중재병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

1) 중재조항에 의한 중재병합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은 중재의 기본원칙이므로 중재병합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⁸⁾ 다수 계약체결 이후 병합되어 단일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중재조항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법체계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관련된 중재절차의 병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시 먼저 당사자간의 중재병합에 대한 합의를 고려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판정부는 이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¹⁰⁾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중재병합의 의도가 있는지를 유무확인을 위하여 먼저 중재조항을 검토하게 된다.¹¹⁾ 중재조항 상에 중재병합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 중재병합도 중재조항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되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중재조항의 내용에 따라 병합하여 처리한다.¹²⁾

대부분 당사자는 중재조항에 중재병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조항을 근거하여 중재병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¹³⁾ 그러나 다수의 계약 분쟁일 경우, 계약당사자가 동일

8) Julie C. Chiu(1990), *op.cit.*, p.70

9) 정홍식(2014), “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제115호, pp.81-82.

10) Gary B. Born(1994),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Commentary and Materials”*(2nd ed.), Kluwer Law and Taxtion Publishers(Boston), p.672.

11) S. I. Strong(1998), “Third Party Intervention and Joinder as of Righ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fringement of Individual Contract Rights or a Proper Equitable Measure?” *31 Vand. J. Transnat’l L.* 915, p.929

12) Alan S. Rau & Edward F. Sherman(1995), “Tradition and Innov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30 Tex. Int’l L. J.* 89 , pp.110-111; Gary B. Born, *op.cit.* , p.672; S.I. Strong, *op.cit.* , p.938

하고 다수 계약의 중재조항이 동일할 경우에 당사자가 중재병합의 의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⁴⁾

2)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병합

중재조항에 중재병합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상의 중재병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정하게 된다.¹⁵⁾ 대다수 당사자는 중재조항 상에 중재규칙을 약정하며,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중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이 자동 적용되며, 이는 중재병합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중재규칙에서만 중재병합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중재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ICC 「중재규칙」 제10조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단일 중재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당사자들이 병합에 동의한 경우, 중재의 모든 신청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따른 경우 그리고 중재의 신청이 2개 이상의 중재합의에 따른 경우에도 중재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이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KCAB의 「국제중재규칙」은 모든 계약에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있다면 중재합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거래 또는 지속적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계약의 청구에 대해 단일 중재신청을 허용하고 있다.^(22조) 또한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간의 중재이면, 진행 중인 다른 사안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지만 중재합의, 분쟁의 성격 그리고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해서 병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규칙상 중재병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중재병합의 판정 시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재규칙이 중재병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부가 적합한 방식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되기 때문이다.¹⁶⁾ 여기서 적합한 방식은 중재판정부가 상황에 따라 중재병합으

13) J. Gillis Wetter(1987), "A Multi-Party Arbitra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ume 3, Issue 1, p.2

14) ICC Arbitration Case No. 5989(1989) 사례에서, 근거 계약과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은 상이하였다. 근거 계약의 중재조항에는 '양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우선 양당사자가 위원회를 위촉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매계약상의 중재조항에는 '양당사자간의 분쟁은 우선적으로 상호간의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독립적인 중재인이 ICC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두 사안의 중재조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이유로 두건의 병합을 인정하였다.

15) Gary B. Born, *op. cit.*, p.672.

로 진행 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⁷⁾

현재 중재병합을 명시한 중재규칙이 많지 않으며 더욱이 당사자가 중재병합을 반대할 경우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당사자중재는 당사자간에 하나의 중재절차를 이용하여 관련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거나 계약에 대한 해석 결과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¹⁸⁾

3) 국내법에 의한 중재병합

중재조항과 중재규칙에서 중재병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국내법 규정이 적용된다.¹⁹⁾ 뉴욕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중재 관련 협약에서는 중재병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네덜란드, 홍콩,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및 미국 등 일부 국가와 지역의 국내법에서 중재병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첫째, 법률에 따라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중재병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중재병합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 둘째, 중재병합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i) 법률로서 수권을 받은 법원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중재병합을 명하게 되며, ii)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적으로 중재병합을 명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국제상사중재조약은 중재병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국내 관련법 또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중재병합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중재병합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1279조에서는 2개 이상의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또는 다른 중재계약에 관해 해당 중재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중재의 병합을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²⁰⁾ 영국 「중재법」 제35조에서 i) 중재당사자들은 다른 중재절차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중재관련 심리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ii)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16)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 「국제중재규칙」 제16조 제1항; UNCITRAL 중재규칙 제15조 제1항; LCIA 중재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17) S. I. Strong, *op. cit.*, p.970

18) 강수미(2009), “다수당사자중재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3권 2호, p.42.

19) Gary B. Born, *op. cit.*, p.672.

20) 미국 주 법률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2개주만이 중재절차의 병합을 명령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부에 중재의 병합권한을 부여할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병합을 명령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병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²¹⁾

Ⅲ. 다수당사자 중재병합의 합리성

1. 중재병합의 합리성 판단기준

중재병합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기밀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재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며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재절차의 진행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정, 중재절차의 집행에 있어서 중재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판정부는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리를 갖고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및 중재절차에 대한 규제는 간접적인 당사자의 합의라고 볼 수 있고, 중재병합은 중재판정을 통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비공개심리 원칙에 따라 중재인과 중재기관도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대다수 당사자는 기업의 영업 비밀과 상사분쟁에 대한 비밀 목적으로 분쟁 해결방식인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중재의 기밀성 원칙에 의거하여 중재병합을 불허한 경우도 있다.²²⁾ 그러므로 강제적 중재병합이 중재의 기밀성 원칙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각국의 중재규칙에서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중재의 당사자가 중재합의 주체로서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의 기밀성은 양당사자가 약정한 중재조항에 기초하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지라도 중재합의로 귀결된다.²³⁾ 다음으로, 중재인은 당사자가 분쟁해결

21) 김명엽(2003), 전제논문, p.219.

22) Oxford Shipping v Nippon Yusen Kaisha, [1984] 2 Lloyd's Rep. 373: 본 사건은 선주와 제2선주, 제2선주와 운송인간의 중재합의를 체결하였다. 유사한 분쟁이 각각의 중재를 제기됨에 따라 신청인은 양 사안에 대한 청구의 병합을 요청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중재의 사인성에 의거하여 중재병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23) 네덜란드 「중재법」 제14조에서도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양당사자로 제한되며, 당사자의 특정한 약정이 없는

을 위해 수권한 자로서 비밀의무의 주체로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대리인, 증인, 중재기관의 관련자 등이 비밀의무의 주체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서는 비공개로 심리할 경우 중재대리인, 증인, 중재원, 중재정의 자문전문가, 지정감정인, 중재위원회 비서국 관련 직원은 사건의 실체와 절차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또한 미국 「중재협회 국제중재규칙」에서 비밀의무의 주체는 중재인과 협회행정 관리직원이라고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재기관의 관련 직원은 중재인과 그 법률적 지위가 상이하지만 비밀 준수의 의무를 부담해야만 한다.

2. 합의에 의한 중재병합

유효한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며, 다수당사자중재의 경우 내용에 대한 다수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당사자분쟁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다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중재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각각의 당사자가 별도로 다수당사자중재에 대한 중재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²⁵⁾

1) 명시적 합의의 중재병합

명시적 합의란 각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중재판정부에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와 중재병합조항이 포함된 중재규칙을 선택함으로써 합의를 인정하는 직접 혹은 간접 명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중재 합의서에 중재병합에 대한 중재조항을 약정하거나 중재합의서에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분쟁 발생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병합을 합의할 수 있다. 직접적인 명시는 합의의 의사표시 시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재병합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합의의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2012년 ICC 「중재규칙」 제10조에서 ICC 법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할 수 있음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²⁶⁾ 위와 같이 중재병합에

한 당사자는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절차 혹은 중재심리 중의 심리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 2000년 「중재규칙」 제37조에서 사건을 비공개 심리할 경우 당사자 쌍방 및 그 중재대리인, 증인, 중재원, 중재정의 자문전문가, 지정감정인, 중재위원회 비서국 관련 직원은 사건의 실체와 절차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강수미(2009), “다수당사자중재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3권 2호, p42

26) 영국의 1996년 「중재법」 제35조; 일본의 1997년 「상사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 제41조

대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명시적 합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중재합의서의 합의를 존중하므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비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재병합의 규정 및 그 적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명시적 합의는 각국의 입법이나 중재규칙 등 법률규정이 필요조건이 아니며 단지 당사자의 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실무에서 법률 및 규칙의 명문 규정이 적용상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분쟁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합의의 인정 측면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다. Erith Contractors Ltd. v. Costain Civil Engineering Ltd. 사례에서²⁷⁾ 원 도급과 하청도급 계약관계에서 원도급계약의 분쟁이 하청 도급계약과 관련되고, 한명의 중재인 선정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서면으로 하청도급인에게 통지하여 두 분쟁사안을 단일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 도급계약과 하청계약이 연관성이 존재하고 서면 통지로 양당사자의 합의를 한 점에서 중재병합처리 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처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직접 합의된 중재조항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둘째, 각 당사자가 중재병합조항이 포함된 특정한 중재규칙을 선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의 일부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선정된 중재규칙 상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재사안을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라 관련 사안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²⁸⁾ 현재 일부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 중재병합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²⁹⁾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병합은 간접적인 당사자자치의 원칙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 명시적 합의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기밀성원칙에 부합된다.

2) 묵시적 합의의 중재병합

당사자간의 중재병합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추정에 따라 관련 사안을 병합할 묵시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재병합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여부를 확정함에 있어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중재병합에 대한 합의의 존재 가능성이 비존재 가능성보다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³⁰⁾

27) Okuma Kazutake(2003),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solidation of Multiparty and Classwide Arbitratio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9, no. 1, pp.194-198

28) 2012년 영국 「런던해사중재협회 중재규칙」(LMAA: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제14조에서 중재판정부는 둘 혹은 둘이상의 중재사안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9) 1997년 「런던 해사 중재원 협회 규칙」(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Terms) 제15조 제2조; 1997년 일본 「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1조 제1항; 2003년 「뉴욕증권거래소 중재규칙」(New York Stock Exchange Arbitration Rules) 제612조 제4항도 중재병합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묵시적 합의와 관련하여, i) 다수당사자가 공동으로 중재 합의를 작성하거나 ii) 동일한 중재규칙 혹은 중재판정부를 선정하는 행위로 중재병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의 경우는 *Companies Espanola de Petroleos S. A. v. Nereus Shipping S. A.* 사례에서 모든 당사자는 '보충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중재병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후자의 경우, 동일한 중재규칙은 중재조항의 엄격한 일치야 아닌 실질적 내용상의 합치로 간주한다.³¹⁾ 하지만, *Eastern Saga* 사례에서처럼 단정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선주, 운송인, 하청운송인간에 두명 씩 런던중재조항을 약정하였고 분쟁이 발생하자 중재판정부에 중재병합절차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두 중재사안 모두 동일한 중재판정부를 선정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재절차의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다.³²⁾ 따라서 관련 분쟁 사안간에 복수의 중재절차에서 비록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선정되었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가 중재병합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국제상사거래에서 다수당사자간에 복수 계약이 존재하지만, 합작과 협력을 위하여 다수당사자가 공동으로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먼저 중재합의는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서면적인 합의서로서 다수당사자가 동일한 중재합의를 약정한 경우 당사자는 중재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통일된 중재합의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Nereus* 사례에서 선주 대리인, 용선인 그리고 보증인은 먼저 선주대리인과 용선인이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용선계약 및 당사자는 공동으로 보증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 당사자가 동일한 묵시적 합의의 중재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중재병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재병합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다수당사자가 중재절차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강제적 중재병합의 합리성

강제적 중재병합이란 위의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 중재사안의 중재절차를 강제적으로 병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병합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i) 당사자의 직접적인 병합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ii) 중재규칙으로 수권 받은 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ii) 병합의 합의를 묵

30) *Connecticut General Life Ins. Co. v. Sun Life Assure. Co. of Canada*, 210 F. 3d 771(7th Cir, 2000)

31) ICC 제5989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두 계약의 중재조항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므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재병합을 인정하였다: *ICC Case No. 5989 of 1989*, 15 Y.B.Com. Arb.(1990), p.74

32) *Oxford Shipping v Nippon Yusen Kaisha*, 2 Lloyd's Rep 373[1984].

시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2000년 이전 미국의 연방 중재법상에 강제적 중재병합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적용상의 견해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2000년 개정 「통일중재법」(Revised Uniform Arbitration Act, RUAA) 제10조에서 중재합의서에서 중재병합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독립적인 중재절차의 병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콩 「중재조례」 제6B 제1절에서 다수의 중재절차일 경우 법원은 각 중재절차 사안의 동일한 법률과 사실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중재절차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강제적 중재병합의 제도 하에서 당사자는 중재병합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나 포괄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입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³³⁾ Shui On Construction Co. Ltd. v. Moon Yik Company & Others 사례에서,³⁴⁾ 건축상 S사와 E사는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S사와 L사는 엘리베이터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두건의 계약서상에 표준중재조항이 포함되었다. S사의 공사 지연으로 E사는 S사에 대금결제를 지연시키자 S사는 L사에 결제를 지연시켰고 결국 L사는 S사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결국 E-S, S-L 중재사안에 대해 S사는 법원에 중재병합을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L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중재사안은 유사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존재하므로 중재절차의 병합을 인정하였다.

각 국가 및 지역의 입법에서 강제적 중재병합제도 하에서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중재병합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분쟁사안의 처리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중재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병합을 불허하고 있다.

33) 1986년 네덜란드 「중재법」 제1046조에서 네덜란드 국내에서 이미 개시된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 사안과 이미 개시된 다른 중재절차사안이 관련성이 있다면 암스테르담 법원에 중재절차의 병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1997년 「중재법」 제2절 제1조에서 다수의 중재절차 중 중재판정부가 동일하고 각 중재절차가 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각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34) Shui On Construction Co. Ltd. v. Moon Yik Company & Others, Schindler Lifts(HK) Ltd. v. Shui On Construction Co. Ltd. [1987] 2 HKLR 118, <http://neil-kaplan.com/wp-content/uploads/2013/08/Schindler-Lifts-Hong-Kong-Ltd.-V-Shui-On-Construction-Co-Ltd-HCA7005-of-1991.pdf> (최종방문 2018. 1. 4)

주요 국가 및 중재기관의 중재병합³⁵⁾

국가 및 중재기관	강제적 중재병합	신청주체	판정주체	기타
미국 RUAA ³⁶⁾	가	일방 당사자	법원	
영국 「중재법」 ³⁷⁾	불	당사자 전원의 동의	법원	당사자 전원 동의로 중재판정부 권한부여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³⁸⁾	가	일방당사자	지방법원장	전부 또는 부분병합 허용
한국 KCAB 「국제중재규칙」	가	일방 당사자	중재판정부	하나의 신청서 제출 의견 진술의 기회부여
일본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³⁹⁾	불	전체 당사자	협회 또는 중재판정부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 ⁴⁰⁾	가	일방 당사자	중재판정부	제3자 및 신청 당사자의 서면동의
ICC 「중재규칙」 ⁴¹⁾	가	일방 당사자	중재판정부	
UNCITRAL 「중재규칙」 ⁴²⁾	가	일방 당사자	중재판정부	각당사자의 의견 표출의 기회부여

- 35) 유병욱(2008),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논의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pp.135-13 참조.
- 36) 미국의 2000년 개정된 「통일중재법」 제10조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서 병합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재청구들의 병합을 주의 법원들이 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상균, (2010),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검토”, 「청주법학」 제32권 제1호, pp.183-184참고
- 37) 영국 「중재법」(1996) 제35조에서 중재절차가 다른 중재절차와 병합되거나 심리의 병행이 이루어질 것을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고(제1항),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의 병합이나 심리의 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병합이나 심리의 병행을 명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제2항).
- 38)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1046조에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장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 서로 관련 있는 중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강수미(2009), 전제논문, p.47
- 39) 일본상사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2008) 제44조 제1항에서 복수의 중재가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경우 협회 또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전체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거쳐 병합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0) 런던 국제중재재판소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1988)의 「중재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일방당사자의 요청으로 1명 또는 1명 이상의 제3자는 중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신청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41) ICC 「중재규칙」 제10조에서 일방당사자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다수의 중재사안을 병합할 수 있으며 강제적 중재병합도 인정하고 있다.
- 4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중재규칙」(2010년 개정)은 제14조 제2항에서 당사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확장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제 17조 제5항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를 중재 당사자로 추가 또는 병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관련 당사자(추가 또는 병합의 대상인 제3자 포함)이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이후 병합이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병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희택(2013), 「국제투자분쟁에서의 UNCITRAL 중재규칙 활용 실무」,

IV. 다수당사자 중재병합의 법률적 쟁점

1. 제3자 중재

제3자 중재는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중재사안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주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우 그 적용이 어렵다. 다수당사자가 한번에 중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수당사자 전체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양당사자간 중재합의는 존재하나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분쟁해결에 포함시켜야만 해결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중재조항에 합의하지 않는 비서명자인 제3자의 중재참여 권리와 그 지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제3자의 중재참여 권리와 관련하여 중재신청서에 열거된 피신청인만 중재에 참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중재신청인으로 제한된다는 전통적인 견해이다.⁴³⁾

그리고 현대적 견해로 비록 중재절차가 이미 개시되었지만 제3자는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⁴⁾ 예를 들어, KCAB 「국제중재규칙」 제21조에서 당사자 전원과 추가 당사자(제3자) 모두 서면으로 중재절차의 참가를 동의하거나 추가당사자가 기존 당사자들과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로서 추가 당사자가 중재절차 참가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가 중재절차 참여 비준을 받았다면 중재절차의 당사자 중 한명으로서 중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러한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중재효율성의 저하, 비용증가, 분쟁처리 시간 지연 등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추가를 불허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관점에서 중재의 합의성 원칙과 중재조항에 따라 합의하지 않는 자는 중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중재합의를 하지

법무부, 참고.

43) A, B, C와 D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쟁 발생 후 A는 단지 B와 C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D가 중재에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A가 D에게 중재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D가 비록 중재조항에 서명한 자이지만 중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ICC Case no. 5625 of 1987.

44) 네덜란드 「중재법」 제1045조에서 i) 제3자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로, 제3자가 중재결과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제3자도 서면으로 중재절차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제3자의 중재참여 동의 여부를 판정할 권한을 갖으며, 동시에 중재절차를 지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허할 수 있다. ii)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당사자가 제3자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중재판정부에 제3자의 중재참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통지발송이 지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3자와 당사자간에 서면 합의를 작성한 후에 제3자의 중재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김명엽(2003), “다수당사자중재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p.225 참고.

않는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려면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도 제3자를 중재에 참여시킬 수 없다.⁴⁵⁾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하더라도 중재판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⁴⁶⁾

2.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의 중재병합에 있어서 중재인의 선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의 중재규칙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⁴⁷⁾ 그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 중재기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극소수의 경우에만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을 지정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며,⁴⁸⁾ 중재인의 선정방법은 양당사자의 중재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다수당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중재조항에 합의하지 않은 비서명자까지 중재병합의 범위로 확장하여 중재병합을 인정하는 경우에 중재인선정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평등의 원칙은 중재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전통적인 양당사자간의 중재에서, 3인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한 명을 선정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이 실현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3이상인 다수당사자중재에서도 모든 당사자가 각각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갖는지 아닌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Dutco사례에서⁴⁹⁾ Ducco(D), Simmens(S), BKMI(B)사는 ICC의 중재조항이 포함된 시멘트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 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3인의 중재인에 의해 중국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S,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S사는 중재를 제기하였다. 중재법원이 본 사안에 대한 중재절차를 병합처리하자 당사자간에 중재인 선정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국제 ICC 중재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중재인의 선정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45) S. I. Strong(1998), *op. cit.*, p.926.

46) 김명엽(2003), 전제논문, p.227

47) S. I. Strong, *op. cit.*, p.929

48)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은 첫째, 양당사자 각각 중재인을 선정하고 제3의 중재인은 양당사자의 동의로 선정하는 것이며(CIETAC 중재규칙 제24조 전문) 둘째, 양당사자 각각 중재인을 선정하고 제3의 중재인은 중재기관에서 지정하거나(LCIA 중재규칙 제5조 제5항) 셋째, 양당사자가 각각 지정하고 제3의 중재인은 선정된 두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공동 추천하는 방식이며(SIAC 중재규칙 제8조 1항), 넷째는 모든 중재인을 당사자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다(AAA 중재규칙 제5조).

49) Siemens AG and BKMI Industrienlagen GmbH v. Dutco Consortium Construction. Co. Ltd.,

못할 경우 중재재판소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재재판소는 D에게 1명의 중재인의 선정을 명하고, S와 B는 공동으로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중재판정부의 성립 후 S와 B는 D, S, B는 모두 중재조항의 당사자로서 그 지위는 모두 평등하며 D에게 독자적인 중재인 선정권을 부여한 중간 판정이 부당하다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중재조항을 약정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다수당사자중재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므로 이 같은 중재인선정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은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ICC의 Westland 사례에서,⁵⁰⁾ 영국의 W사는 6명(아랍에미리에이트 연합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그리고 4개국이 공동 설립한 국제조직과 다국적기업)을 피신청인으로 명시하였다. 중재과정에서 W사가 독립적으로 1명, 다수의 피신청인이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집트 정부가 제네바법원에 중재인선정상의 문제점 즉 중재판정부의 구성방식이 공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당사자 모두 ICC 중재규칙의 적용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중재인선정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그러나 ICC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인을 선정함으로써 W사에 우호적인 지위를 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중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도 당사자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주장하는 ‘본인을 대표’하는 중재인을 선정한다는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⁵¹⁾

현재 중재기관에서 다수당사자중재를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중재규칙과 입법 상에 다수당사자중재 시 중재인 선정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수당사자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ICC 「중재규칙」 제10조, LCIA 「중재규칙」 제8조 1항과 CIETAC 「중재규칙」 제27조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ICC 「중재규칙」에서 첫째, 연합지정(joint nomination)으로 당사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양분하여 각각 공동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간에 연합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기타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도 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다수당사자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정 문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중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50) Westland Helicopters Limited v. 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and others, Interim Award Regarding Jurisdiction: ICC Case no. 3879 of 1984.

51) Eric A. Schwartz, Multi-party Arbitration and the ICC ; In the Wake of Dutco, 10 *J. Int'l Arb.* 5,(1993), p.9

3. 중재판정부의 구성규칙

다수당사자중재는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불공정의 여지를 안고 있다.⁵²⁾ 뉴욕협약 제5조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와 중재를 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구성규칙은 직접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재병합에 대한 규범이 확립되지 못하여 중재기관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재병합 과정에서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중재합의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1998년 ICC 「중재규칙」 제10조에서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3인의 중재판정부로 심리하도록 하며,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동의 한명의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공동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중재판정부 구성방식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은 임의 중재판정부 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utco 사례에서 세 당사자는 통합 합의로 분쟁을 ICC로 해결한다고 약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 A는 B와 D에게 개별 중재를 신청하였다. ICC는 중재가 병합심리 되어야 하며 피신청인 B와 C는 공동으로 한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중재과정 중 피신청인 B와 C는 개별 중재 및 개별 중재인 선정을 요청했지만 ICC는 청구를 불허하였다. 그 결과 두 피신청인은 공동의 중재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판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권리는 공공정책의 문제에 속하므로 피신청인 B와 C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인정하였고 집행금지신청을 허가하였다.

ICC 중재규칙 제10조에서 중재병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 제3항에서 새로운 중재판정부 구성규칙을 규정하였다. 즉 중재병합의 가능여부 판정 시 중재판정부는 관련 정황을 고려하며 다수의 중재인이 한 건 이상의 중재 사안에서 임명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포함되며 중재병합이 전체 당사자가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 중재사안은 가장 먼저 제기된 중재사안에 병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52) 유병욱(2008),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논의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p.141.

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되지 않는다면 중재 의의가 있을까.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뉴욕협약에 기초한다. 뉴욕협약에 중재병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모든 당사자가 중재병합에 합의하고 법원이 그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하고, 중재병합이 공서양속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도 인정된다. 또한 중재병합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취소도 뉴욕협약의 제약을 받는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서 첫째, 판정이 중재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둘째,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할 수 있다.⁵³⁾ 강제적 중재병합은 중재합의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규칙의 적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와 상충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취소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뉴욕협약을 적용할 경우 중재병합의 판정범위가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분쟁사안까지 인적범위가 확장될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취소 가능성은 가중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적 중재병합에 대한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특정 중재지의 선정이 중재병합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⁵⁴⁾ 그러나 일부 국내법에서 강제적 중재병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 지역의 중재를 선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재조항 상에 중재병합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중재지법에 따라 강제적 중재병합이 적용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법에 강제적 중재병합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중재조항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규칙을 합의해야지 당사자의 합의가 중재지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뉴욕협약의 규정상 강제적 중재병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

53) 뉴욕협약(1958) 제5조 1항.

54) 중재조항의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중재조항에 중재지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규칙을 명확히 명시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중재병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중재지법에 강제병합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당사자의 약정보다 중재지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뉴욕협약의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중재조항에 중재판정부의 구성규칙만을 명시했지만 중재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기관이 판정하며 중재지법으로 법원의 중재병합을 강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이다. 셋째, 중재조항에 중재지를 명시하고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재지법으로 법원의 중재병합을 인정하지만 중재조항에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법원은 자체적으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와 중재조항이 부적합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 넷째, 중재조항에 중재지와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에서 중재지를 지정하고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Jarvin, Sigvard, "Consolidated Arbitrations,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and the Dutch Arbitration Act 1986 - A Critique of Dr. van den Berg", 2 *Arb. Int'l* 254(1987), pp.254-256.

유의 원칙이외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국내법 및 국제규칙의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제거래과정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수당사자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병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당사자분쟁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 및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 복수의 사안을 단일중재 절차로 병합하는 중재병합에 관한 규정이 통일되어 규율하지 못하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판의 반복과 모순된 판정 그리고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ICC 개정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2016년 한국 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자 추가, 다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의 신청, 청구의 병합 등 새롭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중재의 기본원칙이므로 중재병합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다수 계약체결 이후 병합되어 단일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중재조항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수당사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당사자가 복수당사자간의 중재를 의도할 경우 반드시 그 취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명확한 다수당사자 중재조항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중재절차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다수당사자중재와 관련하여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중재절차의 중재병합에 있어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더불어 중재병합과정에서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상의 문제 그리고 중재병합 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국제중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미(2009), “다수당사자중재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3권 2호.
- 김상균(2009), “미국에서의 복수당사자 중재에 관하여”, 「원광법학」 제25권 1호.
- _____(2010),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검토”, 「청주법학」 제32권 제1호.
- 김명엽(2003), “다수당사자중재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 1호.
- 이강빈(1998), “다수당사자 중재에 있어서 절차병합과 중재인선정”, 「중재연구」 제8권
- 신희택(2013), 「국제투자분쟁에서의 UNCITRAL 중재규칙 활용 실무」, 법무부,
- 유병욱(2008),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논의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 정홍식(2014), “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제115호.
- 한낙현(2016), “국제운송계약상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관계에서 인적범위의 확장에 관한 고찰-영국의 해사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통상학회지」 제16권 제4호.
- Alan S. Rau & Edward F. Sherman(1995), “Tradition and Innov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30 *Tex. Int'l L. J.* 89
- Eric A. Schwartz(1993), Multi-party Arbitration and the ICC ; In the Wake of Dutco, 10 *J. Int'l Arb.* 5
- Julie C. Chiu(1990), “Consolidation of Arbitral Proceeding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7
- Martin Platte(2002), “When Should an Arbitrator Join Cases?”, 18 *Arb. Int'l* 67 , p.68
- Okuma Kazutake(2003),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solidation of Multiparty and Classwide Arbitratio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9, no. 1
- S. I. Strong(1998), “Third Party Intervention and Joinder as of Righ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fringement of Individual Contract Rights or a Proper Equitable Measure?” 31 *Vand. J. Transnat'l L.* 915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Sung-Min Yun

• Abstract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 inseparable part of today'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brought by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pose problems for traditional arbitration system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released upda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6 Rules) and has adopted innovatio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the 2016 Rules a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l process, and introduce the process for consolidation of claims.

For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t would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dopt a multi-party arbitration clause, as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des effective resolutions for multi-party disputes.

〈Key Words〉 multi-party arbitration, multi-party disputes, arbitration agreement, consolidated arbitration, arbitration